

U N	목 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세 부 목 표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지 표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I. 글로벌 지표 정의

<2유형>

지표명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정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수입 관세를 측정 관세란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로, 물품가격기준 또는 특정 기준 (예: 100kg당 \$7)에 따라 부과되며, 관세는 유사한 지역생산 상품에 대한 가격 우위를 창출하고 정부 수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됨. 무역구제조치 및 세금은 관세로 간주되지 않음

II. 데이터 설명

[데이터] 상품별 선진국 실효 관세율, 최혜국 지위 및 특혜지위

산식	종가세(ad valorem) 형태로 제시되지 않은 일부 관세율은 종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환산되어야 하며, 관세선 수준에서 개인 수입업자를 통해 단가 방법으로 환산됨. 일부 제한된 비종가(non-ad valorem) 관세율은 종가세 상당치로 제공될 수 없고 계산에서 제외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수입 관세 데이터는 국제무역센터(ITC)의 MAcMAP, WTO의 ID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TRAIN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공표주기	부정기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on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글로벌 지표 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7-12-01.pdf ■ 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